

1.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동 57-4 번지 일대의 7개소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지적승인 하시기 바랍니다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(붙)

(제4안)

수신 : 홍부처장관

발신 : 서울특별시장

참조 : 법무담당관
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동 57-4 번지 일대의 7개소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지적승인 하시기 관보 게재를 의뢰합니다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선명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
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 (붙)

(제5안)

수신 : 서울특별시장

발신 : 구청장

참조 : 시민과장

제목 : 시장직인 날인 의뢰

1. 우리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별첨고시문 사본과
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관계부서 송부공문에 대한 시장직인 날인을 의뢰
합니다.

가. 의뢰문서 : 건설부 및 총무처 장관에게 송부하는 공문 각 1부

(계 2부)

첨부 1. 고시문 사본 1부

2. 관계 공무원서 사본 2부 (끝)

(제 6안)

수신 : 서울특별시

발신 : 구청장

참조 : 시설계획과장, 지적과장

제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보고

1. 우리구 관내 창동 57-4 번지 일대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(도
로)에 대하여 별첨고시문 사본과 같이 지적승인 하였고 보고 합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

(제 7안)

수신 : 토목과장

제목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통보

1. 우리구 관내 창동 57-4 번지 일대외 1개소 도시계획시설(도

로)에 대하여 별첨 고사문 사본과 같이 지적승인 하엿기 증보하니 관련

업무에 참고토록 할것.

소부 : 고사문 사본 1부 (공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시행령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26호(88.5.3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

검정된 우미구 관내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

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 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보조소유자

및 이에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8. 5.

서울특별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적승인 변경검정조서

구분	등급	류번	번호	복원	인상	기점	종점	비고
기성	데도	3	38	25	3,760	노원구 우미동(중1-4)	중당천(대수 174)	
변경	"	"	"	"	3,420	"	노원구 창동 57-4	일부 구간 선명변경
기정	송도	1	78	20	4,250	노원구 창동(대수 38)	노원구 우미동(대수 57)	
변경	"	"	"	"	4,000	"	"	시점변경 대수 250

(공)